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21
------	------

발의일자 : 2021. 8. 24.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김경완 의원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정의를 통해 동 단위 거점에 대한 규정 정비와 기존에 운영되던 생활권 단위 캠프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명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나. 자원봉사캠프 정의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용
추가(안 제5조)

라. 생활권단위 자원봉사캠프 내용 추가 (안 제13조)

마. 자원봉사활동 홍보 문구 및 행사(워크숍) 추가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8. 24. ~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를 “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로 하며, “지역사회문제”를 “지역 사회 문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조례등”을 “조례 등”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 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4조 중 “관한시책”을 “관한 시책”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체결하여위탁하며”를 “체결하여 위탁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생활권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을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을 원하는 주민들이”를 “주민들이”로, “자원봉사에접”을 “자원봉사에 접”으로, “생활권 단위”를 “동 단위”로, “설치할수”를 “설치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동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는 자연소멸 시 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단체등”을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려려하기”를 “장려하기”로 하고, “각호”
를 “각 호”로, “개최”를 “개최·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로 하고,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활동보고회 등”을 “자원봉사대축제, 자원
봉사자워크숍, 자원봉사활동보고회 등”으로 하고, “자원봉사관련”을
“자원봉사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단체 등에 대하여, 자원
봉사활동보고회 시에는”을 “단체와”로, “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하여포
상 실시”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포상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소속한자원봉사자”를 “소속한 자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에 따라”로, “다음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
원봉사보험”을 “자원봉사 보험”으로 “자원봉사 보험”을 “자원봉사 보
험”으로 하고, “공제 가입”을 “공제가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의 “물품 또는비용”을 “물품 또는 비용”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주민</u>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u>지역사회문제를</u>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지역주민들이</u>----- ----- ----- <u>지역사회 문제</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원봉사활동” <u>이라 함은</u>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u>대가없이</u>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자원봉사자” <u>라 함은</u>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u>뜻은</u> ----- -----.</p> <p>1.-----<u>이란</u> ----- -----<u>대</u> <u>가 없이</u>----- -----.</p> <p>2.-.-----<u>란</u> ----- -----</p>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등을 말한다.

<신 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3.-----란 -----

-----.

4.-----란 -----

-----조례 등-----

-----.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관한 시책-----

-----.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
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
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
영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
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
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
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
로 하되,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
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
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 (생략)

-----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

② (현행과 같음)

③-----

----- 20명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
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결하여 위탁하며-----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장 1명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⑧ (생략)

⑨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생활권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에 자원봉사센터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캠프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

⑥-----
-----20명-----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그 밖에-----

-----.

제13조(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설

치·운영 지원) ①-----주민들이-----쉽게 자원봉사에 접-----
-----동 단위-----
-----설치할 수-----.

② 제1항에 따라-----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동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는 자연소멸 시 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

봉사주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6조(포상) (생략)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활동보고회 등 자원봉사관련 행사개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대축제 시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제출한 단체 등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보고회 시에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 자원봉사자

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원봉사단체 등-----
-----.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포상)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 ---

-- 장려하기 -----
각 호-----개최·지원-----

-----.

1.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자워크숍, 자원봉사활동보고회 등 자원봉사관련 -----

2. -----

단체와 -----

-----자원

· 단체에 대하여 포상 실시

3. (생략)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8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
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
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
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
는 다음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

-----자원봉사보험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

봉사자에 대하여 포상 실시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8조(경력 인정 등) -----

--- 일정 기간 -----

-----.

제19조(보험가입) ① -----

---- 소속한 자원봉사자 -----

-----.

② 제1항에 따라 -----

-- 다음 각 호 -----.

1. -----

-----자원봉사 보험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

<p>입-----.</p> <p>2. (생략)</p> <p>3. (생략)</p> <p>③ <u>기타</u>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 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u>실비지급</u>)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 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u>물품 또는비용</u>을 지급할 수 있다.</p>	<p>입-----.</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u>그 밖에</u> ----- -----.</p> <p>제20조(<u>실비지급</u>) ----- ----- -----</p> <p><u>물품 또는 비용</u>----- -.</p>
--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 ③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 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 ②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센터의 법인운영 시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10. 8.]

제13조(생활권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에 자원봉사 센터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캠프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활동보고회 등 자원봉사관련 행사개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대축제 시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제출한 단체 등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보고회 시에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 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하여 포상 실시
3.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봉사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연수, 복지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탐방 등 행사 실시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8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

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실비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9호, 2003. 09. 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처리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430호, 2005.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 2007. 10.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4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약칭: 자원봉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